

'18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19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지침



제1장 '18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19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관련 서류

구분	작성 서류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신청 업체 (추천기관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양식1>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양식2>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양식3> (현역'만 작성) * 산학협약유형 및 인원배정 대상 확인, 추천평가 배점 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추천권자 (병무청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양식2>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양식3> (현역'만 작성)

차

제1장 '18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19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1

- I.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2
 - 1.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 2
 - 2. 병역지정업체 신청 비대상 3
 - 3.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신청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 4
 -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4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6
 -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12
- II.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추천 14
 - 1. 신규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방법 14
 - 2.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검토/작성 15
 - 3. 병무청 통보 방법 15

제2장 기존 병역지정업체 '19년 필요인원 신청·추천16

- I.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17
 - 1. 필요인원 신청방법 17
 - 2.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19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 요령 19
 -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23
- II.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추천 25
 - 1.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방법 25
 - 2.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검토/작성 26
 - 3. 병무청 통보방법 27

제3장 농어업분야 '19년 필요인원 신청·추천28

- I.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추천 29

I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1.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

가. 공업분야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간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 확인)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신학년제 3차(학교·학생·업체) 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업체
-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사업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분야 업체는 **S/W개발·계산S/W·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월까지(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월까지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까지 / 단,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한 월인 경우는 신청월 전월 말일 기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공장(사업장)의 평균 인원이 10명(5명) 이상. 다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5명) 이상 이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부대장 등으로 확인

- 나. 에너지업 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경우·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중견기업 법인)
- 다. 광업 분야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석탄 제외)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중소·중견기업 법인)
- 라. 건설업 분야 :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 건설업 또는 해외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국내·외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중견기업 법인)
- 마. 수산업 분야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 바. 해운업 분야 :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법인)
- 사. 방위산업 분야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법인)

2. 병역지정업체 신청 비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가.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 2)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 3)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1) 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 2) 업체 소재지(선정 실태조사시 필요하며, 정확히 기재 요망)
 -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 3)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란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란에, 그 외 업체는 대기업란에 √로 표시)
- 4)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 5)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 6)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일자 기재
- 7) 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 8) 업종/산업분류코드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을 명확하게 구분
 -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 9)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 품목명(주공사 내용), 평균매출액 및 수출액(100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 등 기재
- 10) 직원 현황(대표자, 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제외)

- 나.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14.12.31.이전 발생업체 : 2년)
- 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라.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바.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안전보건공단」 발급 ‘산업재해를 확인서’로 확인)
- 사. (신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3.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신청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 가.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작성)
- 나.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
- 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작성)
- 라.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관련 증빙서류(구비)
- * 업종별 추천권자(신청 접수기관)에게 작성·구비서류 제출 (기업규모 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3-가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 가. 작성양식 : 붙임 <양식1>
- 나. 작성요령

- 법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항목에 맞게 기재
 -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11)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19년도 배정요청 인원 : **중소기업은 현역만,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기재** (해운·수산분야는 인원기재 불필요)
 - * 현역은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양식2)의 AA의 인원 기재
- 12) 선박 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 업종은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 내·외항, 외항선박관리업체), 수산업(원양, 근해어업)으로 구분 기재
 - 소유구분은 선주, 선박관리 등으로 구분 기재
 -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소유(임차) 연월일, 어획·운송 실적(억원), 수출액(억원) 등 상세히 기재
- 13) 연구기관 선정
- 신규선정 신청업체의 부설연구소가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거나 신규신청한 경우 해당란에 작성

3-나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 가. : 붙임 <양식 2>
- 나. 작성요령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신청서」와 같은 항목은 동일하게 기재)
- ☐ A열부터 AF열까지 기재 "AG~SI열(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작성 제외"**

- 1) A열(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입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산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 3) B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4) C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 5) D~F열(소재지)
-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 6) G열(대표자) ~ K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 7) L~Q열(전화번호, 팩스번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재금지),

-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 8) R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 9) S열(산업분류코드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 참고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
- 10) T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 11) U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 12) V열(법인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 13) W열[공장(사업장)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공장(사업장)과 동일법인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 대표이사, 일용직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근로자 제외
- 14) X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참조
- 15) Y열(수출액) : '17년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18년 설립된 업체는 신청 당시까지의 수출액 기재
- 16) Z열(산학연계 협약 여부)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마이스터고**”로 기재
 -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 2자) 협약업체 및 지자체, 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업체는 “**특성화고(2자)**”로 기재
 - 산학협력사업 미참여 업체 및 기업 자율로 특성화고와 협약한 업체는 “**미참여**”로 기재
- ※ 졸업지에는 '19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지에는 '19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채용예정 확인서)

※ 산학연계 협약형태

구분	주관기관	협약형태	취업경로
인력양성사업 협약(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3자(기업, 학교, 학생)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마이스터고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2자협약	마이스터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일학습병행제 협약	고용노동부	2자 협약	특성화고 등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중앙부처 외)	지자체, 지역교육청, 기업 등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 17) AA-AF열(필요인원) - **중소기업은 현역만 기재,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기재**
- 현역은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 해운·수산업 분야는 인원기재 불필요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 학교, 학생, 3자)협약자 - 중소기업기술사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99년12월31이전 출생자 해당	AB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는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 '19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2 순위	○ 특성화고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기업, 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 특성화고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특성화고 졸업자 등 * '99년12월31이전 출생자 해당	AC열 해당
2-1 순위	○ '00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00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년도 졸업이후('18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AD열 해당
3 순위	○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E열 해당

-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로 인정한 학교
- 일반(종합)고등학교의 직업교육과정학과 등 졸업자는 비대상(3순위 해당)

- AB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 AC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 AD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 AE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 졸업지에는 '19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지에는 '19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8년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 '09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의 '00년생은 ‘현역’에 포함하여 반영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자는 배정인원 환산)
- ※ '01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병역의무 비대상자는 제외

유의사항 ▶

- ▶ 인원배정 신청 당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예정자 포함)으로서 업체에 채용(예정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게 한하여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 되며,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의 경우에 배정 가능
 -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 현역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를 채용해야 함
-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 해당여부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작용) 소지자로서 아래사항 해당자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 가. : 붙임 <양식 3>
- 나. 작성대상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AB~AD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 명부(AB~AD)의 현황과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 다. 작성요령 **· 중소기업의 현역대상자만 작성(중견·중소기업의 보충역은 작성 제외)**
- 1) B~G열(업종)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기재내용과 일치
 - * **(기존업체)** : B열(업체코드)와 C열(업체명)은 병무청 업체명부의 '업체코드'와 '업체명'을 일치하게 기재
 - * **(신규업체)** : B열(업체코드)은 '신규업체'로 기재
 -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자 성명
 - 3) I열(생년월일) : '99년7월10일생의 경우 **"990710"** 형태로 기재
 -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 **'99년생 병역판정검사 미 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0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180225" 형태로 기재
 - * 인원배정은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 8) N열(기술자격 명칭) : "기계조립기능사" 형태로 기재
 - * 현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증 필요

- 9) O열(인원배정대상 구분)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3-나-17'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B열 해당('00년생은 AD열)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력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의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C열 해당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B열 해당('00생은 AD열)
 -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B열 해당('00년생은 AD열)
 -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B열 해당('00년생은 AD열)
- ※ 졸업지에는 '19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지에는 '19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II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추천(추천권자)

1.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 방법

- 가. 추천기관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구분하여 추천·평가 (별도시트)**
- 나. 추천기관은 업종별로 추천대상 업체의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추천 (방위산업체는 제외)
- 추천등급은 업종별로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등급 부여
- 【예시】 동일 업종에 총 40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경우, 평가점수 순으로 A부터 J까지 각 4개씩 등급부여
- 다. 추천등급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배점 및 등급 부여
- 추천기관 자체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후 등급 부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및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포함)참여업체, 청년친화 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근로환경 우수업체 우대 배점 부여(기 협조사항)**
 - ☞ 산업기능요원 선정·배정 업종별 추천권자 실무회의 개최('18.3.15.)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협약) 업체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형,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 일·학습병행제 참여(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참여 포함) 업체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가.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신청업체에서 작성 신청한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기재사항 확인·검토 및 평가점수·평가순위·평가등급 작성

☞ A~AF열까지 확인·검토, AG~AI열(평가점수·순위·등급) 작성

- **중소기업의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인원**(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B~AD열)과 **졸업생 근무자 명단 일치여부 확인, 수정**
 - '근무자 명부'의 인원배정 대상 구분(O열) 확인시 신청업체에서 필요한 서류(산학연계협약서 등) 징구 등을 통하여 확인

나.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란 작성

- 1) AG열(평가점수) : 모든 업체에 대해 업종별 평가점수 기재
- 2) AH열(평가순위) :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 기재
- 3) AI열(평가등급) : 평가점수 순에 따라 A~I등급 균등배분

※ 동점일 경우에는 자체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균등배분

3. 병무청 통보방법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를 첨부하여 '18.7.31.까지 통보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하여 통보(별도 시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는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근무자명부과 구분하여 통보(별도파일)

2장 기존 병역지정업체 '19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추천 관련 서류

구분	작성서류
병역지정업체 (추천기관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양식4>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양식3> * 우선 인원배정대상자 확인 및 추천평가 배점 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추천권자 (병무청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양식4>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양식3>

※ 해운·수산업분야와 중견기업은 신청 필요 없음(방위산업체는 신청)

I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1. 필요인원 신청 방법

가. 필요인원 신청 비대상 업체

- 복무관리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처분받은 해 다음해부터 적용)
 - 고발업체 : 3년('16년~'18년 고발된 업체)
 - 경고업체 : 2년('17년~'18년 경고받은 업체)
 - 주의업체 : 1년('18년 주의받은 업체)
 - '18년에 파산된 업체
 - '17년에 인원배정을 받고 채용하지 아니하고 '18년에도 인원배정을 받았으나 올해 말까지 전혀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 '17~'18년에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
 - '16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 '17~'18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업체
- ※ 해운·수산업분야와 중견기업은 신청 불요(방위산업체는 제외)

나.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생을 우선 배정함에 따라, 우선 배정대상자별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인원을 기재하고, <양식4>의 **우선 배정 대상자 인원**(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의 1~2-1순위)과 <양식3>의

졸업생 근무자 명단이 일치하게 작성

- * 우선 인원배정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신청업체에서는 필요한 서류(산학연계협약서, 취업예정확인서 등)를 구비, 제출

다. 인원배정 신청 당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예정자 포함)으로서 업체에 채용(예정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 되며,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의 경우에 배정 가능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라.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 해당여부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소지자로서 아래사항 해당자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 가.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
- 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작성)
- 다.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관련 증빙서류(구비)
 - * 업종별 추천권자(신청 접수기관)에게 작성·구비서류 제출

2가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가. 작성양식 : 붙임 <양식 4>

나. 작성요령

- A열(업체코드) : 병무청에서 부여한 고유코드(업체 기재 생략)
- B열(업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종
 -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산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 C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D (업체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체명
- E열(소재지)
 -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 F열(대표자)~H열(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등 해당내용
- I열(전화번호), J열(팩스번호), K열(홈페이지), L열(이메일)
 -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산업기능요원 업무 담당자 전화(휴대전화번호 기재금지) 및 팩스번호 정확히 기재
- M열(주생산품목) :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 기재
- N열(선정년도)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도(업체 기재 생략)
- O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 P~Q열(상시근로자) : 필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 병역지정업체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참조
- S열(산학연계 협약 여부)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마이스터고**"로 기재

-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 2자) 협약업체 및 지자체, 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업체는 "**특성화고(2자)**"로 기재
- 산학협력사업 미참여 업체 및 기업 자율로 특성화고와 협약한 업체는 "**미참여**"로 기재

※ 산학연계 협약형태

구분	주관기관	협약형태	취업경로
인력양성사업 협약(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3자(기업-학교-학생)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마이스터고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2자협약	마이스터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일학습병행제 협약	고용노동부	2자 협약	특성화고 등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중앙부처 외)	지자체, 지역교육청, 기업 등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 T~X열(필요인원) : 현역만 기재(보충역은 총괄 배정으로 불필요)
 -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구분	대상자	비고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졸업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99년12월31이전 출생자 해당 	U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역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 '19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 특성화고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특성화고 졸업자 등 * '99년12월31이전 출생자 해당	V열 해당
2-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00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년도 졸업이후('18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W열 해당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X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로 인정된 학교
 - 일반(종합)고등학교의 직업교육과정학과 등 졸업자는 비대상(3순위 해당)

- U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 V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 W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 X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졸업자에는 '19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19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8년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샐레지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99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 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0년생은 '현역'에 포함하여 반영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자는 배정인원 환수)
 ※ 이미 산업기능요원 편입된 사람 '1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병역의무 비대상자는 제외

2-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 가. : 붙임 <양식 3>
- 나. 작성대상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W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 **필요인원 신청명부(U~W열)와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 다. 작성요령 * **중소기업의 현역대상자만 작성(중견·중소기업의 보충역은 작성 제외)**
- 1) B~C열(업종)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기재내용과 일치
 - * **(기존업체)** : B열(업체코드)와 C열(업체명)은 **병무청 업체명부의 '업체코드'와 '업체명'을 일치하게 기재**
 - * **(신규업체)** : B열(업체코드)은 '신규업체'로 기재
 -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자 성명
 - 3) I열(생년월일) : '99년7월10일생'의 경우 **"990710"** 형태로 기재
 -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 **'99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0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180225" 형태로 기재
 - * 인원배정은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 8) N열(기술자격 명칭) : "기계조립기능사" 형태로 기재
 - * 현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증 필요

- 9) O열(인원배정대상 구분)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2-가-14(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0년생은 W열)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의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V열 해당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0년생은 W열)
 -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0년생은 W열)
 -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0년생은 W열)
- ※ 졸업자에는 '19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19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II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추천(추천권자)

1.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방법

- 가. 추천기관은 업종별로 추천대상 업체의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추천(방위산업체는 제외)
- 추천등급은 업종별로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등급 부여
- 【예시】 동일 업종에 총 40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경우, 평가점수 순으로 A부터 J까지 각 4개씩 등급부여
- 나. 추천등급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배점 및 등급 부여
- 추천기관 자체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후 등급 부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및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포함)참여업체, 청년친화 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축친화 인증기업 등 근로환경 우수업체 우대 배점 부여(기 협조사항)**
 - ☞ 산업기능요원 선정·배정 업종별 추천권자 실무회의 개최('18.3.15.)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협약) 업체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형,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 일·학습병행제 참여(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참여 포함) 업체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2.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검토/작성

- 가. 병역지정업체에서 신청한 '필요인원 신청명부' 기재사항 검토 및 평가점수·순위·등급, 비교 작성
- ☞ **A~X열까지 확인·검토, Y열~AB열(평가점수·순위·등급, 비교) 작성**
- <양식 4>의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인원(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W열)과 <양식 3>의 졸업생 근무자 명단 일치여부 확인, 수정**
 - '근무자 명부'의 인원배정 대상 구분(O열) 확인시 신청업체에서 필요한 서류(산학연계협약서 등) 징구 등을 통하여 확인
 - 업체에서 작성한 항목별 기재사항 이상 유무 검토, 수정
 - * I~M열은 수정사항 있을 경우 수정(붉은색 표시)
- 나.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A~H열, N열(업체코드,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선정년도)는 변경 금지**. 다만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의 정보와 병무청 통보 명부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AB(비고)란에 기재하고**, 병무청 통보 명부에 없는 업체(**명부상 누락업체**)가 신청한 경우 **명부 맨하단에 작성(비고란에 "추가"로 기재)하여 통보**
- * 주의) A~H열, N열은 전산 확인용 자료이므로, 변경시 자료 이식이 되지 않음.

.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란 작성

- 1) Y열(평가점수) : 모든 업체에 대해 업종별로 평가점수 기재
 - 2) Z열(평가순위) :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기재
 - 3) AA열(평가등급) : 평가점수 순에 따라 A~J등급 균등배분
- * 동점일 경우에는 자체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균등배분

4) AB열(비고) : 신청한 업체의 해당정보(A~H열, N열)중 병무청 통보명부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기재

3. 병무청 통보방법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를 첨부하여 '18.7.31.까지 통보
 - * 추천점수 부여를 위한 구비서류 등 관련서류는 통보 불요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는 신규 선정대상 병역지정업체의 근무자 명부와 구분하여 통보

제3장 농어업분야 '19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필요인원 추천 관련 서류

구분	작성서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병무청에 제출)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 <양식5>

I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추천

1. 필요인원 신청·추천 방법

- 가. 작성양식 : 붙임 <양식 5>
- 나.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후계농어업 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시트1)와 '농업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시트2) 구분 작성
- * 보충역도 신청
- 다. 작성요령 : 시·도, 구(자치구)·시·군 순으로 작성
- 1)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 필요인원의 계열(농어업계/비 농어업계) 및 추천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평가점수를 정확히 기재
 - * 평가배점 기준 및 상한선 배점 적용 철저
 - 2) 농업기계운전·수리요원
 - 시·군·구별로 필요인원 기재
 - *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의 역종(현역)확인 철저
 - * '99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0년생은 "현역"대상에 포함

2. 병무청 통보방법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를 첨부하여 '18.7.31.까지 통보

<양식 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17. 9. 2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양쪽)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업규모 []대기업 []중대기업 []중소기업	업체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설립일	자본금	업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주 공사내용)	매출액/수출액	건축물 용도	

직원 현황 (제외)	구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인							
	공장(사업장)							

*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명, 보충역 명

선박명유 현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원수	조업(항해) 구역	업종	소유 구분	소유(임차) 연월일	어획, 운송 실적(역원)	수출액

연구기관 선정 []	주소	주 연구분야	신규 선정 신청 []
-------------	----	--------	--------------

같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경영원부록부(경영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용 예정) 1부 2.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회계(통계)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1부 3. 광업산업체 지정서 사본(광업산업체만 해당한다) 1부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경영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용예정)는 제출한다 2. 사업자를 특정(영종지역) 관련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만 해당한다 3. 경영원부록부(경영분야의 제출예정)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장정보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허용수준은 필요에 동적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접방법

1. 신청정보유통행의 일종은 연세, 공채로 구분하여 최고 소위 구분은 자신소유, 임차 또는 신청관례로 구분하여 적외, 기재없이 부족한 경우에는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연구관 신청: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연에 √표시를 하고 주소 및 연구분야를 적용내(다)연구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 전에 √표시를 하고 주 연구분야를 적용내(다).

<양식 2>

'18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19년 필요인원 신청명부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터넷주소	E-mail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일	산업분류코드	주생산품명(선택적수및명)	자산총액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하															

법인	공장(사업장)	평균매출액	수출액	산학연계협력여부	필요인원(현역)				필요인원(보충역) *중간기업만 작성	추천권자 평가									
					계	①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차) 협약자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마이스터고 졸업자/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자(99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1순위	②특성화고 졸업자 중 ① 이외의 사람(99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2순위	③ ①에 해당하는 00년생 출생자 또는 ②에 해당하는 00년생 출생자 중 '18년 이후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중인 사람 - 2-1순위		④ 기타 인력(①②③ 이외의 사람) - 3순위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인력배정 신청 명부의 이해를 위해 항목을 2개로 나누어 표시(원 명부는 가로서식으로 A부터 시까지 하나의 행으로 연결)

<양식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연번	업체 관련사항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생 관련사항								
	업체코드	업체명	소재지			업종	성명	생년월일	출신학교	전공과	업종(현역)	업체취업(예정)일자	기술자격명칭	인원배정대상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하									

<양식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업체코드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이메일	주생산품목	신청년도	자산총액(단위:백만원)	상시근로자수(단위:명)		평균매출액(단위:백만원)
															법인	공장	

산학연계협력여부	계	필요인원(현역)				추천권자 평가			비고				
		①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차) 협약자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마이스터고 졸업자/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자(99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1순위	②특성화고 졸업자 중 ① 이외의 사람(99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2순위	③ ①에 해당하는 00년생 출생자 또는 ②에 해당하는 00년생 출생자 중 '18년 이후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중인 사람 - 2-1순위	④ 기타인원(①②③ 이외의 사람) - 3순위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 기존 병역지정업체 인력배정 명부의 이해를 위해 항목을 2개로 나누어 표시(원 명부는 가로서식으로 A부터 AB까지 하나의 행으로 연결)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 (엑셀시트1)

A 시도	B 시군구	C 읍면동	D 순위	E 성명	F 생년월일	G 최종학력	H 업종(현역)	I 농어업계/비농어업계	평가점수						P	
									J 총점수	K 영농경영정착의욕(배점)	L 학력및고학력(배점)	M 영농영어경력(배점)	N 영농영어기반(배점)	O 사업계획		가정

농업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 (엑셀시트2)

A	B	C	D	E				
시도	시군구	계	농업기계수리요원	농업기계운전요원				